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국가공무원복무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(공무원노조법),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(교원노조법) 개정('22. 6.10.)으로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신설됨('23.12.11. 시행 예정)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근무시간 면제자의 노동조합 관련 공가 사용 규정 정비(안 제19조)

-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단체협약이나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면제 시간을 사용하도록 현행 공가 규정 정비

나.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시 복무처리 근거 신설(안 제29조)

-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, 교원노조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복무처리의 근거 신설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1호 중 “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”를 “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같은 법 제9조”로 한다.

제5장의 제목 “정치 운동 및 노동 운동”을 “정치 운동 및 노동 운동 등”으로 한다.

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(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)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 또는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의5 또는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5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.

이 영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공가)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.	제19조(공가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(選任)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(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, 연 1회로 한정한다)에 참석할 때	11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같은 법 제9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2. · 13. (생 략)	12. · 13. (현행과 같음)
제5장 <u>정치 운동 및 노동 운동</u>	제5장 <u>정치 운동 및 노동 운동</u> 등
<u><신 설></u>	제29조(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) <u>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</u>

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
또는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
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
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
지정된 공무원은 「공무원의 노
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
률 시행령」 제3조의5 또는 「교
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
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5
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
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
용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복무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444